

소득에 따른 사학연금 일부지급정지 (소득심사) 개선에 관한 연구

강성호*, 김수성**

〈 초 록 〉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지역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핵심용어 : 연금 지급정지, 퇴직소득심사제, 사학연금, 국민연금, 형평성

*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연구팀 차장

제1장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4대 공적연금은 공히 퇴직소득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연금지급액의 일부를 정지 또는 감액하는 소위 퇴직소득심사제도¹를 두고 있다. 동 제도는 사학연금의 경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연금의 과다지급 방지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 안정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노령연금)² · 조기퇴직연금 · 장애연금³(장애연금) · 유족연금 수급자가 연금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해당 기간 동안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 또는 정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소득심사제는 수급자간 형평성 제고와 연금재정안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퇴직소득심사제는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반면, 퇴직 후 노동공급을 줄이게 됨으로써 오히려 노후준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연금수급자에게만 적용되고 일시금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행정절차만 복잡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의 적용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1.35%에 거쳐 재정안정화의 효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형평성 미흡, 근로의욕 약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의혹들이 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퇴직연금심사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동안 퇴직연금심사제와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2. 여기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언급되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연금과 동일한 성격이며,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구분됨(이하 동일). 따라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본 고에서의 퇴직연금은 공적연금 분야의 노령연금임을 밝힘.
 3.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서는 '장애연금', 군인연금에서는 '상이연금',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으로 정의됨.

몇몇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수성(2008)은 퇴직소득심사제가 사학연금의 연금재정안정화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므로 동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과의 제도적 비교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김수성·윤성만(2012)은 퇴직연금심사제가 연금수급자에게 이중과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연금수급자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지은정(2005)은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르면 동 제도는 노동공급에 부정적이고, 노후소득보장에서 역행적일 수 있는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퇴직소득심사제가 노동공급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가 많다. 지급정지 제도를 통한 소득심사는 고령근로자의 노동행위 공급에 대한 반대유인(disincentive)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시간 축소 및 임금소득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OECD, 1998; Gruber and Orszang, 2000; Thompson, 1998; Blondal and Scarpetta, 1999 외) OECD 국가의 연금개혁의 주요 논의 사항이 되었다.(OECD, 2001)⁴. 고령자의 재정적 여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공적연금에만 노후소득을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금이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을 감액 혹은 정지하는 것을 소득심사제도(Retirement Earnings Test, RET)로 언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지급정지제도로 명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외국의 경우 연금 이외 소득에 대한 심사에 있어 금액 혹은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은 소득발생여부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급정지제도를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소득심사제도의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소득심사제도가 도입된 1935년에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처럼 연령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를 정지하였다는 점에서 제도 초기에는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를 소득심사제도 유형 중 하나로 본다.

4. OECD 대부분 국가의 연금개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조기퇴직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는 것이며 둘째,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기여와 급여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적 중립성을 증진시키는 것임. 셋째, 대안적 조기퇴직 경로(조기퇴직급여, 실업급여, 장애급여)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점진적인 퇴직으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이를 위해 부분연금과 소득심사제도의 폐지 혹은 개선이 논의되고 있음.

또한, 해외의 소득심사제도의 소득범위를 근로소득에만 한정하고 저축, 투자, 보험, 연금, 임대소득, 로열티 등은 제외시킴으로써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있었다(Rejda, 1999; Suh, 2001 재인용). 결국 재정적 자본(financial capital)보다 노동과 같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통해 근로를 지속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셈이 된다(Bartlett, 2000).

그 동안 선행연구들은 재정안정화, 세제 및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퇴직소득심사에 관해 살펴본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동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간 퇴직소득심사제의 제도 내용에 대한 비교를 통해 두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이론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둘째, 제도 비교에 추가하여 수리적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 체계는 제1장 문제제기에서 연구목적, 선행연구, 차별성을 제기하고, 제2장에서는 공적연금제도에서 지급정지제도의 개요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행 사학연금제도에서 연금지급정지를 경험하고 있는 수급자 규모 등 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제4장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제도 간 형평성 등을 수리적으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개선방안 및 결론을 제시한다.

제2장 공적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특징 및 현황

1. 사학연금(특수직역연금)의 지급정지제도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 사학연금법 제42조에서는 공무원연금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다. 지급정지는 퇴직(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이하 동일)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합산 금액(월평균 기준, 2018년 233만 원)이 일정 수준(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⁵ 이때 지급정지액은 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연금제도의 취지가 퇴직 후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에 있다는 점에서 퇴직 후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을 조정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즉, 퇴직소득심사에 의한 연금액의 감액으로 생긴 재원은 취약한 계층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심사의 대상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국한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이렇게 설정된 이유는 연금지급의 취지가 근로능력 상실에 따라 소득을 보전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지급 하였던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다만, 2014년 소득세법(제19조)의 개정이전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역연금은 퇴직소득심사 대상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제외되어 되었다. 그러나 제도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6년 귀속 소득부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됨으로써 특수직역연금의 퇴직소득심사 대상소득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었다.

연금지급정지제도의 대상자는 과거에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제도가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최근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공무원연금법 제47조), 장애연금 수급자는 적용대상이

5.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함.

되며(공무원연금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유족연금수급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퇴직소득심사제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공적연금의 퇴직소득심사제의 현황

구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소득 심사제 여부	법 제47조	공무원연금법 준용	공무원연금법 준용	○
감액되는 소득 종류	사업·근로	좌동	좌동	좌동
감액되는 연금 종류	- 퇴직연금/조기퇴직 연금(법 제47조) - 장애연금(법 제55조)	공무원연금법 준용	공무원연금법 준용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소득활동노령연금) ⁶ - 장애연금
퇴직 후 소득과약 근원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좌동	좌동	좌동
적용기준	소득기준 적용(연령제한 없음)			좌동(최장 5년 제한) * 舊 재직자노령연금에서는 연령제한

주 : 국민연금에서 퇴직소득심사제는 주로 '소득활동노령연금'과 관련됨.

가. 연금지급정지의 유형과 주요 개정 내용

2016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연금 전액 정지가 되는 대상이 확대되었고, 소득기준이 변경되었다.⁷

퇴직소득심사에 의해 연금지급정지가 되는 형태는 전액정지와 일부정지로 구분되며, 여기에 적용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기준 변경과 대상소득범위의 확대가 있었다. 먼저, 연금 전액 정지 대상자가 확대된 것에 대해 살펴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특수직역연금수급자(예,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사학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 시에만 연금이 전액 정지되던 것이 2016년 1월 1일부터는 그 대상이 추가되었다. 즉, 특수직역연금수급자가 선거직 공무원 및 정부출연 기관에 재임용 및 재취업할 경우에도 전액 정지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6.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참조(舊 재직자노령연금)

7.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만 원 미만 절사)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으로 취임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그리고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예, 공공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이상인 경우⁸에도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2015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67만 원)의 1.6배는 약 747만 원이다. 연금 전액 정지 기간은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된다.

〈표 2〉 연금지급정지제도(퇴직소득심사제)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전(2015년 까지)	개정후(2016년 이후)	관련법령
연금전액정지 대상 확대	- 특수지역연금법 적용 받는 기관으로 재임용시 전액정지	- 특수지역연금법 적용 받는 기관으로 재임용시 전액정지 - 선거직 공무원 및 정부출연 기관에 재임용 및 재취업할 경우에도 전액 정지 -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6배 이상인 경우 전액 정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소득기준 변경 (연금일부 정지관련)	-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초과시 연금일부정지	- 공무원연금법상 평균연금월액 초과시 연금일부정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 근로·사업(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근로·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자료 : 저자가 법령 등을 참고하여 정리

한편, 소득기준 변경은 연금일부지급정지와 관련된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사학연금 수급자가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고용노동부 매년 3월 고시)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 합계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지급정지 되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고용노동부 매년 3월 고시) 기준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⁹(퇴직연금+유족연금)을 초과하는 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 합계액)이 있는 경우에 일부 지급정지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즉, 사학연금의 일부정지 소득기준이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평균연금월액으로

8. 1.6배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가 정지됨.

9.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변경된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으면 초과소득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 연금 일부정지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말한다.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다음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다음의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 실제 사업비용을 공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2017년 귀속)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 3〉 2017년 귀속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¹⁰

(단위: %)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011000	채소, 화훼작물재배업	93.5	-	11.9
221200	신문 및 정기간행물	94.6	-	20.1
341001	제조 / 자동차	89.6	-	14.1
451101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	91.6	-	12.2
702001	부동산 중개업	68.6	-	17.4
471101	변호사	44.6	-	17.7
940302	배우 등	39.0	14.6	14.2
940600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58.4	41.8	23.4

자료 : 국세청 홈택스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를 참조함.

나. 지급정지액 산정방식

연금지급정지액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의거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정지되나 당해 연도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정지하고 당해 연도 소득이 확인되면 추후 연금지급정지액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하게 된다. ‘18년의 경우를 보면, 연금공단¹¹은 국세청으로부터 ‘17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금액을

10. 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 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11. 이하 별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연금공단은 사학연금공단을 의미함.

일부가 지급정지 된다.¹² 물론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표 5〉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연금지급정지액 산출 기준

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자료 : 공무원연금법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3항을 참고하여 재구성

다. 지급정지 현황

〈표 6〉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학연금제도에서 퇴직소득심사로 인해 발생한 연금지급 정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2016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2018년 1월 사학연금수급자 중 2,972명이 지급정지 되었으며, 그 정지금액은 총 276억 원으로 나타났다. 동 수치는 지급정지가 된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며, 실제로 소득은 있으나 기준금액 미달로 지급정지가 되지 않은 수급자는 제외된 것이다.

〈표 6〉 퇴직소득심사에 따른 연도별 사학연금의 지급정지 현황

(단위 : 건수, 백만 원)

소득종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근로소득	건 수	694	772	862	939	1,323	4,590
	정지 금액	6,663	7,611	8,701	10,142	11,056	44,173
사업소득	건 수	125	117	127	138	804	1,311
	정지 금액	1,256	1,182	1,433	1,585	7,273	12,729
근로+사업	건 수	104	130	166	176	845	1,421
	정지 금액	1,372	1,462	1,872	2,207	9,284	16,197
합계	건 수	923	1,019	1,155	1,253	2,972	7,322
	정지 금액	9,291	10,255	12,006	13,934	27,613	73,099

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내부자료(2018)를 활용함.

12. 예를 들어 월연금 수령액 300만 원인 교직원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인 233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 90만 원이 있을 경우 31만 원이 지급정지됨(50×0,3+40만 원×0,4=31만 원).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비율은 2016년 기준 4.66%(전체 사학연금 수급자 63,782명 대비)에 해당되며,¹³ 전체 연금지급액은 2016년도에 2조 7,016억 원으로 이중 지급정지금액은 276억 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누적금액 등을 고려하면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건수 및 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2016년부터 지급정지 대상소득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표 6〉 참조).

정지건 수를 대상자 수로 전환하여 2016년 소득기준 지급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2016년 기준으로 총 2,481명이 연금의 일부가 정지되고 있으며, 이중 2백만 원 미만의 연금수급자가 294명(13+63+218명)을 차지하고 1.5백만 원 미만자도 76명(13+63명)으로 나타났다. 월별 지급정지액 평균금액은 916,927원으로 대상자를 고려한 월별 지급정지액 합계 금액은 2,264백만 원이다.

〈표 7〉 2016년 소득 기준 사학연금 수급자의 지급정지 금액 현황

(단위: 명, %, 원)

구분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 1.5백만원 미만	1.5백만원 ~ 2백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계
대상자수	13	63	218	2,187	2,481
비중	0.5	2.5	8.9	88.1	100.0
지급정지액 평균	191,928	381,822	494,900	978,719	916,927 ¹⁾
연금 외 소득평균	50,420,769	54,832,222	65,977,310	90,274,627	87,030,860 ²⁾

주: 1), 2)는 소득기준별 평균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전체 평균액으로 산출함

사학연금 수급자의 월급여(소득공제 전)가 3,256천 원 이하인 경우(2018년 기준) 연금지급정지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종별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8〉은 2018년도 월연금 급여구간별 연금지급정지액을 보여주고 있다. 즉, 수급자의 소득활동으로 퇴직연금 이외에 별도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연금 급여기준 3,256천 원¹⁴(소득월액 환산 시 2,330천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연금의 지급정지가 발생하게 됨을 보여준다.

13. 전체 연금수급자 63,782명중에서 유족연금수급자 6,066명을 제외한 감액대상자는 퇴직연금수급자인 57,084명과 장해연금수급자 123명 및 연계연금수급자 511명을 합한 57,716명임.

14. 월급여 3,256천 원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면 39,072천 원이고 여기에 연간 근로소득공제액인 11,110.8천 원을 차감하면 연간 근로소득금액은 27,960천 원이 됨.

〈표 8〉 2018년도 소득금액별 지급 정지금액 (예시)

(단위 : 원)

월급여 ¹⁾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²⁾	소득월액 ³⁾	초과소득월액 ⁴⁾	지급정지액 ⁵⁾
3,000,000	36,000,000	10,650,000	25,350,000	2,112,500	-	-
3,256,000	39,072,000	11,110,800	27,960,000	2,330,000	-	-
3,500,000	42,000,000	11,550,000	30,450,000	2,537,500	207,500	62,250
4,000,000	48,000,000	12,150,000	35,850,000	2,987,500	657,500	213,000
4,500,000	54,000,000	12,450,000	41,550,000	3,462,500	1,132,500	416,250
4,700,000	56,400,000	12,570,000	43,830,000	3,652,500	1,322,500	511,250
5,022,000	60,264,000	12,763,200	47,500,000	3,958,333	1,628,333	677,000
5,500,000	66,000,000	13,050,000	52,950,000	4,412,500	2,082,500	957,750
5,750,000	69,000,000	13,200,000	55,800,000	4,650,000	2,320,000	1,124,000
6,000,000	72,000,000	13,350,000	58,650,000	4,887,500	2,557,500	1,290,250
6,500,000	78,000,000	13,650,000	64,350,000	5,362,500	3,032,500	1,622,750
7,000,000	84,000,000	13,950,000	70,050,000	5,837,500	3,507,500	1,955,250
8,000,000	96,000,000	14,550,000	81,450,000	6,787,500	4,457,500	2,620,250
9,000,000	108,000,000	14,910,000	93,090,000	7,757,500	5,427,500	3,299,250
10,000,000	120,000,000	15,150,000	104,850,000	8,737,500	6,407,500	3,985,250

주 : 1) 월급여 = 총급여/12월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소득월액 = 근로소득금액/12월

4)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2,330,000원

5) 지급정지액 = 초과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에 대한 정지 비율

2. 국민연금의 지급정지제도

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소득활동노령연금, 舊 재직자노령연금)¹⁵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특수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은 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이하, 소득활동노령연금), 연기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다. 이중 퇴직소득감액에 해당되는 노령연금은 조기노령연금과 소득활동노령연금이다.

15.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참조.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연금수급개시연령¹⁶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동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정지 된다.¹⁷

이에 반해 소득활동노령연금 수급자는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된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A값¹⁸을 초과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또한 ‘월평균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합산 금액¹⁹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활동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적용 방식을 보면, ‘15.7.29이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기준²⁰으로 감액되었으나, 그 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기준으로 변경되어 소득구간별로 차등적으로 감액된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활동노령연금의 감액누진율은 초과소득월액의 5%~ 25% 수준이다. 따라서 2018년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가 연금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A값(2018년 2,270,516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초과소득월액)의 일정비율만큼 감액(구간별 감액 적용)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 감액한도는 특수직역연금과 동일하게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적용기간은 법에서 정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 5년 동안이며,²¹ 적용기간이 존재하는 점은 특수직역연금과 차이가 있다.

16.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2018년 이후부터 만 62세(1957년)부터 정상적인 연금수급이 시작됨. 따라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그 보다 5년 앞선 57세~62세 미만까지가 대상임(국민연금법 제61조).

17. 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제1호

18. 국민연금의 A값은 2018년 2,270,516원, 2017년 2,176,483원, 2016년 2,105,482원, 2014년 1,981,975원, 2013년 1,935,977원, 2012년 1,891,771원, 2011년 1,824,109원(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9.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0. 연령별 감액률은 ‘15.7.29이전 지급사유 발생 건에 적용되던 것으로 1세대당 10%p 감액되는 형식임. 즉, 최초 수급연령(현재 62세)에서 지급률이 50%이며, 1세 증가할 때 마다 10%p 증액하여 67세 이후에는 감액되지 않은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됨.

21.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2018년 이후부터 만 62세(1957년)부터 연금 수급자이며, 62세 이상 67세 미만까지 감액대상이 됨(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동법 부칙 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표 9〉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감액(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 원
100만 원~200만 원 미만	5만 원+(100만 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 원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5만 원+(200만 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 원
300만 원~400만 원 미만	30만 원+(300만 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 원
400만 원 이상	50만 원+(400만 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 원 이상

주 : 1)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액의 1/2

2) 2015.7.29. 법 개정 전에는 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다소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연금액의 50% ~ 10%)을 감액하였음.

자료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를 참고하여 재구성

이 때 국민연금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퇴직소득심사)는 연금급여 이외에 추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상당하더라도 다른 추가적 소득이 없으면 퇴직소득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와 달리 유족연금에 대해 소득기준에 의해 지급이 정지된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한 후 최초 3년간, 그리고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²² 즉, 가입자의 사망 후 3년 초과시점에서 해제연령(〈표 10〉 참조) 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국민연금의 A값을 초과하는 소득)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2016.11.29. 이전은 19세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2.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표 10〉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출생연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주 : 사망일이 2013.1.1.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자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해 유족연금 급여가 감액될 수 있는데,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한다. 즉,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게 된다(국민연금법 제113조). 다만, 동 규정은 소득활동에 의한 것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다. 국민연금 지급정지 현황

현행 국민연금은 55세 이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하다가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유족연금 수령을 3년 동안 한 이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정지 된다.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884명, 유족연금 수급자 중 2,110명이 소득활동으로 인해 연금지급이 정지되었다. 또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된다. 〈표 11〉에 의하면 2016년 12월 당월 기준 총 61천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었다. 그 중에서 가입기간 20년 이상이 28천명, 가입기간 10~19년이 31천여 명이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6천명이다.

〈표 11〉 소득활동 종사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계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기간 10-19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	61,142	28,040	31,492	1,610
금액	37,653	24,147	12,575	931

주 : 2016년 12월 당월 기준

자료 : 정인영 · 유현경 정책보고서(2017)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pp. 71-72.

사학연금 지급정지액 규모와 동일 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지급정지액을 산출해 보면 <표 12>와 같다. 사학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급여(소득공제 전)가 3,256천 원 구간에서 초과소득이 발생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기준). 다만, <표 9>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누진율이 초과소득월액의 5%~ 25%로 사학연금의 30~70%보다 낮아 소득수준이 높아도 국민연금의 지급정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표 12> 2018년도 국민연금 소득금액별 지급 정지금액 (예시)

(단위 : 원)

월급여 ¹⁾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²⁾	소득월액 ³⁾	초과소득월액 ⁴⁾	지급정지액 ⁵⁾
3,000,000	36,000,000	10,650,000	25,350,000	2,112,500	-	-
3,256,000	39,072,000	11,110,800	27,960,000	2,330,000	59,484	2,970
3,500,000	42,000,000	11,550,000	30,450,000	2,537,500	266,984	13,340
4,000,000	48,000,000	12,150,000	35,850,000	2,987,500	716,984	35,840
4,500,000	54,000,000	12,450,000	41,550,000	3,462,500	1,191,984	69,190
4,700,000	56,400,000	12,570,000	43,830,000	3,652,500	1,381,984	88,190
5,022,000	60,264,000	12,763,200	47,500,000	3,958,333	1,666,984	116,690
5,500,000	66,000,000	13,050,000	52,950,000	4,412,500	2,141,984	171,290
5,750,000	69,000,000	13,200,000	55,800,000	4,650,000	2,379,484	206,920
6,000,000	72,000,000	13,350,000	58,650,000	4,887,500	2,616,984	242,540
6,500,000	78,000,000	13,650,000	64,350,000	5,362,500	3,091,984	318,390
7,000,000	84,000,000	13,950,000	70,050,000	5,837,500	3,566,984	413,390
8,000,000	96,000,000	14,550,000	81,450,000	6,787,500	4,516,984	629,240
9,000,000	108,000,000	14,910,000	93,090,000	7,757,500	5,486,984	871,740
10,000,000	120,000,000	15,150,000	104,850,000	8,737,500	6,466,984	1,116,740

주 : 1) 월급여 = 총급여/12월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소득월액 = 근로소득금액/12월

4)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2,330,000원

5) 지급정지액 = 초과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에 대한 정지 비율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18)를 활용하여 산출

3. 공적연금 간 지급정지제도의 차이

퇴직소득심사의 대상이 되는 연금은 사학연금의 경우 퇴직연금과 장해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적용된다. 또한 적용되는 소득의 성격을 보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정지에 적용되는 소득은 2016년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됨에 따라 두 제도 간 소득기준에 차이는 없어졌다. 다만,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적용되는 연령에 차이가 있는데, 사학연금의 경우는 초과소득이 있는 한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적용되나,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급 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된다. 적용방식에 있어서는 사학연금의 경우 사학기관, 공무원 등 재취업 시 전액 지급정지 되고 민간기업 취업 시 최대 연금액의 1/2 감액됨에 반해 국민연금에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정지 되고, 소득활동노령연금은 감액된다.

〈표 13〉 공적연금 유형별 지급정지제도의 차이 및 특징

구분	사학연금	국민연금
연금유형	퇴직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노령연금(조기, 소득활동), 유족연금
적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적용 연령	초과소득이 있는 한 계속 적용	연금수급 개시연령(현 62세) + 5세 (62세 이상 67세 미만)
적용 방식	사학기관 재취업 시 전액 지급정지 민간기업 취업 시 최대 연금액의 1/2 감액	조기노령·유족연금 : 정지 소득활동노령 :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

주 : 관련 법(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두 제도 간 차이를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지급정지 금액을 비교 하면 〈표 14〉와 같다. 월급여 3,256천 원에서만 국민연금 지급정지 금액이 많고 그 이상의 월급여액에서는 사학연금 지급정지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급여(A) 대비 지급정지 금액 차이(B)를 비율로 나타내면, 월급여가 증가할수록 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 외보 공무연금연구

2018 기획재정부 8102

2018 재정과제연구

2018 내부연구

〈표 14〉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일부 지급정지 금액 비교

(단위 : 원, %)

월급여(A)	총급여	사학연금 월연금 지급정지액	국민연금 월연금 지급정지액	지급정지 금액 차이(B)	B/A×100
3,000,000	36,000,000	-	-	-	
3,256,000	39,072,000	-	2,970	△ 2,970	△ 0.1%
3,500,000	42,000,000	62,250	13,340	48,910	1.4%
4,000,000	48,000,000	213,000	35,840	177,160	4.4%
4,500,000	54,000,000	416,250	69,190	347,060	7.7%
4,700,000	56,400,000	511,250	88,190	423,060	9.0%
5,022,000	60,264,000	677,000	116,690	560,310	11.2%
5,500,000	66,000,000	957,750	171,290	786,460	14.3%
5,750,000	69,000,000	1,124,000	206,920	917,080	15.9%

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함.

제3장 사학연금 연금지급정지의 문제점

1. 근로의욕 저하

연금은 수급자의 자산(asset)이나 부(wealth)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나, 지급정지제도를 통한 연금급여의 감액은 근로에 대한 세금을 연금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연금수급자들의 불만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연금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평균수명의 연장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퇴직연령이 빨라지고, 기대여명의 증가로 퇴직 후의 노후생활이 길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금수급자들이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퇴직 후 소득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자 하는 요인이 되었다. 물론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을 갖춘 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퇴직소득심사제도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까지 근로의욕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연금지급정지제도는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일률적인 감액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연금소득이외의 추가소득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금액을 정지 혹은 감액함에 따라 저소득층(ex 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부정지)의 근로의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연금지급정지는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초과소득월액이 존재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동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형평성의 문제

가. 국민연금제도와와의 형평성 문제

연금감액 대상자의 경우 특수직역연금은 퇴직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으로 대상 범위가 다르다. 퇴직연금과 노령연금은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으나, 두 제도에서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 수급자이냐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공적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 간 형평성 문제는 서로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지급정지 기간의 문제와 연기연금제도의 존재여부와 관련된다.

먼저 지급정지기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지급정지의 적용 기간이 연금수령시점부터 최대 5년간이나, 특수직역연금은 소득이 있는 한 계속하여 적용된다. 이는 단순히 제도 운영의 차이로 인해 은퇴 후의 근로유인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기연금제도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동 제도는 국민연금제도에만 있다. 즉, 연금개시연령부터 5년간 연금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연금이 지급정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 7.2%의 지급가산율 까지 적용되어 이후 수급기에 정지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기연금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의 연금지급연기는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가능하며, 연기 신청 후 만 65세부터 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된다.²³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데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증액하여 받게 된다. 또한 2015년 7월 26일 이후 연기신청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연기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가산율은 <표 15>와 같다.

23. 연기연금도 연령상한 조정대상에 해당되어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시작하여 66세~70세에 종료된다.

〈표 15〉 국민연금의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가산율

구분	2012년 6월 이전	2012년 7월 이후
신청대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조기 노령연금 포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조기 노령연금 포함)
지급가산율	연 6%(월 0.5%)	연 7.2%(월 0.6%)

한편, 두 제도 간 차이로 인해 연계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동일소득에 대하여 양쪽에서 감액이 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지급정지가 되지 않으나 특수직역연금은 감액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간 차이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나. 소득유형별 감액적용 대상 포함여부의 문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심사의 대상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국한된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등이 많이 발생하는 수급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지급의 취지가 근로능력의 상실에 따른 급부라고 볼 때 근로 혹은 사업소득에 국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취지가 단순히 개인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반대급부라기보다 노후생활 보전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복합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후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공적 소득보장 만이 아니라 공사적 소득보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액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소득범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의 퇴직소득심사제도는 소득범위를 근로소득에만 한정하고 저축, 투자, 보험, 연금, 임대소득, 로열티 등은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 즉, 매년 이자수입과 배당금과 같은 자산소득을 받는 고령자들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회보장급여가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 결국 재정적 자본(financial capital)보다 노동과 같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통해 근로를 지속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셈이 된다²⁴.

24.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자산소득은 노후소득으로서 저축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며, 근로소득의 소득에도 적용한다면 고령자들의 저축이나 자산소득이 감소됨으로써 노후의 경제적 여건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여전히 퇴직소득심사제도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금제도상 퇴직소득심사제가 ‘적정부담·적정급여’를 표방하는 것으로서 연금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 시 감액하는 것이므로 일부소득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다. 일시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

현행 퇴직소득심사제는 연금수급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시금 수급자는 다른 소득이 있어도 지급정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특수직역연금에만 국한되는 문제이며, 국민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일시금보다 연금 수급 시 수익비가 높기 때문에 일시금 수급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정지 혹은 감액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시금과 연금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일시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최근 연간 수령하는 연금총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연금선택을 적게 하고 연금수령액을 2천만 원 수준에 맞추어 선택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참고로 사학연금수급자의 연금선택비율은 <표 16>과 같다.²⁵

〈표 16〉 사학연금수급자의 연금선택 비율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34,137	37,381	40,576	44,357	48,407	53,040	59,059	63,782	69,218
퇴직연금	31,177	34,047	36,849	40,116	43,697	47,782	53,170	57,084	61,692
유족연금	2,875	3,228	3,585	3,999	4,435	4,921	5,416	6,064	6,714
장해연금	78	88	100	105	121	97	102	123	128
연계연금	7	18	42	137	154	240	371	511	684
연금선택률	91.2	91.4	92.0	93.3	94.5	95.2	97.2	88.6	88.0

25. 2017년도 사학연금 연금보고서 참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연금선택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에 들어와 연금선택비율이 97.2%에서 88.6%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연금지급정지 대상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가로 포함되었고 지급정지금액 기준금액도 강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에게는 2016년도부터 추가소득이 발생을 예상하고 이로 인해 감액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금액 보다는 일시금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라.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

현재 저소득자의 일부지급 정지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봄에 있어서 전액 연금으로 수령한 연금수급자와 일부는 연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수령자와의 형평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수급자에게 일부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제도가 다소 가혹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저연금 수급자의 지급정지제도 적용을 유보하고자 할 때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연금은 본래 본인이 퇴직시점에 수령 가능한 일시금 전액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연금수급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하여 본인이 수령가능한 총 일시금액 중에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본인이 퇴직시점에 수령가능한 일시금 총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통상적인 연금수급자는 월 연금액이 2백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총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일시금으로 선택하고 1억 원은 연금으로 신청하여 월 연금액이 1백만 원으로 크게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도의 선택은 저소득자의 일부 연금지급정지를 유보함에 있어서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7년 12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한 수급자는 10,283명이며, 교원은 7,346명이고 사무직원은 2,937명이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백만 원 미만 연금수급자는 교원과 사무직원은 4명과 15명이며, 학교급별로 수령자를 살펴보면 유치원은 2명이며, 초중고는 11명이며, 대학은 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8%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학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급자 현황은 <표 17>과 같다.

〈표 17〉 사학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급자 현황

(2017.12.25.기준, 단위: 명)

구분	유치원(특수학교)		초중고		대학(전문대학)		누계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50만원미만	-	-	-	1	-	-	-	1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	1	2	8	1	5	4	14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	22	30	370	12	559	43	951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0	18	711	355	25	805	756	1,178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61	32	3,913	45	353	519	4,327	596
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9	3	554	16	803	102	1,366	121
300만원이상~350만원미만	16	1	632	2	149	71	797	74
350만원이상~400만원미만	2	-	3	-	40	2	45	2
400만원이상~450만원미만	-	-	-	-	7	-	7	-
450만원이상~500만원미만	-	-	-	-	1	-	1	-
합 계	110	77	5,845	797	1,391	2,063	7,346	2,937

마.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현재 저소득자의 일부지급 정지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봄에 있어서 연금을 정해진 연금지급개시 시점보다 조기에 수령하는 조기퇴직연금 수령자와의 형평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저연금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의 하나는 연금을 정해진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정해진 연금액의 70%에서 95%까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저연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퇴직시점에 수령 가능한 월 연금액이 백삼십만 원 이라고 가정을 해볼 경우 이를 원래 수령개시연령보다 5년 앞당겨서 받게 되면 퇴직연금상당액의 75%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에는 백삼십만 원의 75%인 975,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렇듯 조기퇴직연금으로 인하여 월 연금액이 1백만 원보다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17년 12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한 수급자는 785명이며, 교원은 378명이고 사무직원은 407명이다. 조기퇴직연금의 백만 원 미만 연금수급자는 교원과 사무직원은 1명과 25명이며,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2명이며, 초중고는 8명이며, 대학은 1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기퇴직연금 선택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8%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학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현황은 〈표 18〉과 같다.

〈표 18〉 사학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2017.12.25. 기준, 단위: 명)

구분	유치원(특수학교)		초중고		대학(전문대학)		누계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50만원미만	-	1	-	2	-	1	-	4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	1	1	5	-	15	1	21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1	3	103	14	21	181	135	198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7	2	87	5	57	108	151	115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	-	23	1	53	46	76	47
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	-	1	-	13	19	14	19
300만원이상~350만원미만	-	-	1	-	-	2	1	2
350만원이상~400만원미만	-	-	-	-	-	1	-	1
합계	18	7	216	27	144	373	378	407

바. 연계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현재 저소득자의 일부지급 정지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봄에 있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연계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계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액 중에서 일부는 국민연금을 받고 일부는 사학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그만큼 월연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재직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금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로 2017년 12월 연계연금을 수령한 수급자는 684명이며, 교원은 188명이고 사무직원은 496명이다. 연계연금의 백만 원 미만 연금수급자는 교원과 사무직원은 144명과 367명이며,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39명이며, 초중고는 107명이며, 대학은 365명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자 현황은 〈표 19〉와 같다.

〈표 19〉 사학연금 연계연금 수급자 현황

(2017.12.25. 기준, 단위: 명)

구분	유치원(특수학교)		초중고		대학		누계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50만원미만	5	15	-	29	89	56	94	100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2	17	3	75	45	175	50	267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	-	-	-	-	-	-	-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	10	5	10	30	91	36	111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1	-	1	-	6	18	8	18
합계	9	42	9	114	170	340	188	496

이미 <표 7>에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사학연금수급자 중에서 월연금액에 따라 지급정지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연금 1백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수급자 중에서 지급정지 되는 수급자는 13명에 불과하다. 위의 13명은 <표 17>과 <표 18> 및 <표 19>의 현황에 이미 포함된 수급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조기퇴직연금 및 연계연금을 수령하는 자에 한하여 저소득자의 일부지급 정지 유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7년 12월 25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한 수급자는 전체 50,598명이다. 이중에서 이 중 100만 원 미만의 퇴직연금을 수령한 자는 모두 216명에 해당한다. 직종별로는 교원이 66명이며, 사무직원은 150명이다. 참고로, 2017년 12월 25일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2017.12.25. 기준, 단위 : 명)

구분	유치원(특수학교)		초중고		대학(전문대학)		누계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50만원미만	1	9	1	7	3	3	5	19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3	16	5	43	43	72	61	131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38	93	80	496	65	935	183	1,524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65	100	957	688	137	1,985	1,159	2,773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83	75	1,824	578	558	2,658	2,465	3,311
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83	53	3,689	625	1,352	2,510	5,124	3,188
300만원이상~350만원미만	131	41	12,991	122	1,866	2,274	14,988	2,437
350만원이상~400만원미만	46	44	3,613	1	4,578	964	8,237	1,009
400만원이상~450만원미만	-	3	10	1	3,667	35	3,677	39
450만원이상~500만원미만	-	-	1	-	233	1	234	1
500만원이상~550만원미만	-	-	1	-	30	-	31	-
550만원이상~600만원미만	-	-	-	-	1	-	1	-
600만원이상~650만원미만	-	-	-	-	1	-	1	-
합 계	460	434	23,172	2,561	12,534	11,437	36,166	14,432

3. 소결

현행 사학연금의 지급정지제도의 문제점은 노후소득 감소, 근로의욕 저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초과소득월액과 연금소득월액의 기준시점 차이를 통한 제도의 수용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관련 정책들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21>은 문제점과 이에 대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한 경제적 효과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정책대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초과소득월액과 연금소득월액의 기준시점 차이’에 대해서는 기준시점의 일치가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층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제도와의 형평성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표 21> 지급정지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의 경제적 효과

문제점	정책대안의 경제적 효과
노후소득 감소 및 근로의욕 저하	- 지급정지 유보 시 노후소득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형평성 문제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역연금의 지급정지연수 제한에 따른 영향 - 연기연금 도입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수익비에 미치는 영향
초과소득월액과 연금소득월액의 기준시점 차이	- 기준시점의 일치가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별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하지 않음)
기타	- 연금지급정지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영향 - 지급정지가 사학연금제정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사학연금 지급정지의 경제적 효과

1. 노후소득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는 연금수급액에 대한 지급정지(감액포함, 이하 동일)가 노후소득과 노동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12년~2016년 동안 사학연금을 수급한 약 4만명(5년 기준 약 20만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료 형식은 패널자료 형태로 구축되었다.²⁶

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지급정지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급정지 유보 시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게 되는 지를 분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가정과 분석방법을 설정하였다.

첫째, 소득대체율은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월연금지급액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동 자료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누락된 경우는 3년 평균보수월액의 1.7배²⁷를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지급정지 유보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은 지급정지를 지급정지제도가 없거나 완화할 경우의 추정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연금액과 차이로 정의하였다. 즉, 지급정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노후소득개선 효과는 현행 지급정지역의 100%가 된다.

셋째,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따라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다만,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체계가 바뀌어서(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기준을 전환) 2015년 전후로

26. 앞의 현황 분석에서 제시된 건수기준 통계와 비교할 때 개인은 두 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기준의 빈도는 건수기준에 비해 적음.

27.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있는 수급자의 3년평균보수월액을 비교한 결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은 3년평균보수월액의 1.7배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자료의 연속성이 취약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2018년 동안의 변화율(3년 평균 변화율 4.7%)을 제도 변경 전 시점인 2012년~2014년까지 적용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따라서 2012년~2016년의 분석기간에서 2012년~2014년은 추정자료를, 2015년, 2016년은 실제자료를 최저생계비로 활용하였다.

넷째, 제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외에 학술적으로는 상대빈곤율을 활용하여 빈곤가구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중위소득의 50%를 상대빈곤선으로 하여 그 이하에 대해서는 빈곤가구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외에 연금액에 대해서도 일정연금액(예, 월연금액 100만 원) 이하는 연금소득 빈곤자로 보아 이들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노후소득 개선 여부는 소득대체율의 변화를 통해 추정한다. 또한 지급정지 기준을 현행 방식²⁸을 적용하지 않고 연금급여액이 백만 원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혹은 상대빈곤선)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하는 것을 적용하여 소득대체율 변화를 살펴본다. 이러한 지급정지 기준을 완화하여 살펴보려는 이유는 저연금 수급자에게도 일괄적으로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한편, 이러한 지급정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일시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월연금 지급 통계를 살펴보면 전액 혹은 일부 일시금 수급자의 비중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연금액이 대부분 백만 원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급자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전부 일시금 수급자 비중은 무시할 정도이고, 일부 일시금 수급자의 대부분도 감액 적용제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금수급자와 연금수급자간에 형평성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에서는 앞의 가정에서 정의한 소득대체율을 ‘지급정지 되지 않은 수급자’(완전수급자)와 ‘지급정지 수급자’(정지수급자)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학연금 수급자 전체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7.2%로 나타났으며, 이중 정지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35.1%(2012~2016년 5년 평균), 완전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47.5%로 추정되었다. 완전수급자에 비해 정지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이 12.4%p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8. 초과소득월액에 대해 일정한 정지 비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감액하는 방식임(제2장 참조)

〈표 22〉 연도별 지급정지 여부별 소득대체율

(단위 : %, 명)

연도	전체		정지수급자 ¹⁾		완전수급자 ²⁾	
	소득대체율	빈도	소득대체율	빈도	소득대체율	빈도
2012	46.7	40,841	32.6	793	47.0	40,048
2013	47.4	40,861	32.7	816	47.7	40,045
2014	47.2	40,854	31.7	824	47.6	40,030
2015	47.4	40,860	33.3	833	47.7	40,027
2016	47.3	40,853	39.4	1,920	47.7	38,933
전체	47.2	204,269	35.1	5,186	47.5	199,083

주 : 1) 지급정지(감액포함)된 수급자를 의미 (이하 동일)

2) 지급정지(감액포함) 되지 않은 수급자를 의미 (이하 동일)

이제 지급정지 유보에 따른 소득보장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지급정지 수급자가 지급정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어느 정도 소득대체율 개선효과가 있는 지를 살펴본다. 동 분석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9.2%로 추정되어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14.1%p(49.2%~35.1%)로 분석되었다. 즉 이러한 수치는 지급정지로 인해 14.1%p 만큼 연금소득 수준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3〉 지급정지자의 지급정지 여부별 소득대체율 변화

(단위 : %, %p, 명)

연도	정지수급자 ¹⁾		가정된 완전수급자 ²⁾		소득대체율 개선(B-A, %P)
	소득대체율(A)	빈도	소득대체율(B)	빈도	
2012	32.6	793	47.6	794	15.0
2013	32.7	816	47.3	816	14.6
2014	31.7	824	46.7	824	15.0
2015	33.3	833	48.4	833	15.2
2016	39.4	1,920	52.1	1,920	12.7
전체	35.1	5,186	49.2	5,187	14.1

주 : 1) 지급정지(감액포함)된 수급자를 의미

2) 정지수급자를 지급정지(감액포함) 되지 않은 수급자로 가정할 경우를 의미 (이하 동일)

이제 지급정지 기준에 일정조건을 적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즉, 지급정지를 유보하는 대상자를 연금급여액의 일정수준 미만(예를 들어 연금액 백만 원 미만)이거나 최저생계비(혹은 상대빈곤선) 미만인 수급자로 하는 것이다.

먼저, 지급정지자 중 월연금액 100만 원 미만자에게만 지급정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대체율 변화를 살펴보면 14.5%p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급정지(감액포함)된 월연금액 100만 원 미만자의 소득대체율은 16.7%였으나, 지급정지 되지 않는 것으로 제도 개정이 된다면 31.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5년 합산 지급정지자 5,186건 중에서 3.1%(162건)에 그친다는 점에서 지급정지자는 많지 않아 개별효과는 큰 반면,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부담 효과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24〉 지급정지자 중 월연금액 100만 원 미만자에게 적용 제외시 소득대체율 변화

(단위 : %, %p, 명)

연도	정지수급자 ¹⁾ (단, 월연금액 100만 원 미만)		가정된 완전수급자 ²⁾ (단, 월연금액 100만 원 미만)		소득대체율 개선(B-A, %P)
	소득대체율(A)	빈도	소득대체율(B)	빈도	
2012	18.7	32	36.9	32	18.2
2013	18.5	26	34.9	26	16.4
2014	17.9	29	35.1	29	17.2
2015	16.7	25	31.6	25	14.9
2016	13.7	50	23.2	50	9.5
전체	16.7	162	31.2	162	14.5

주 : 1) 월연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수급자 중에서 지급정지(감액포함)된 수급자

2) 월연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수급자를 지급정지되지 않은 경우로 가정

다음으로, 지급정지자 중 최저생계비 미만자에게 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될 경우 소득대체율 변화를 살펴보면 8.6%p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급정지(감액포함)된 최저생계비 미만자의 소득대체율은 11.5%였으나, 제도 개정이 된다면 20.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5년 합산 지급정지자 5,186건 중에서 1.1%(59건)에 그친다는 점에서 월연금액 100만 원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에 비해서도 지급정지자는 많지 않아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부담 효과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지급정지자 중 최저생계비 미만자에게 적용 제외시 소득대체율 변화

(단위 : %, %p, 명)

연도	정지수급자 ¹⁾ (단, 최저생계비 미만자)		가정된 완전수급자 ²⁾ (단, 최저생계비 미만자)		소득대체율 개선(B-A, %P)
	소득대체율(A)	빈도	소득대체율(B)	빈도	
2012	10.3	4	19.5	4	9.2
2013	12.2	9	22.9	9	10.7
2014	12.7	9	23.8	9	11.1
2015	13.6	11	22.2	11	8.7
2016	10.1	26	17.0	26	6.9
전체	11.5	59	20.1	59	8.6

주 : 1) 최저생계비 미만자 중에서 지급정지(감액포함)된 수급자

2)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지급정지 된 수급자를 지급정지되지 않은 경우로 가정

3)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설정함(가정 참조)

마지막으로, 지급정지자 중 상대빈곤선 미만자(저소득층)에게 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대체율 변화를 살펴보면 16.4%p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상대빈곤선을 고려한 이유는 OECD의 빈곤선 기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로 보고 있으며, 그 이하 소득자를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지급정지(감액포함)된 상대빈곤선 미만자(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22.6%였으나, 해당 저소득층에 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39.0%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5년 합산 지급정지자 5,186건 중에서 9.8%(508건)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제 노동공급(재취업)이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감소시키게 되는지를 여러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한계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회귀분석(Pooled OLS), 임의효과모형(REM), 고정효과모형(FEM)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세 가지 분석모형에서 결과 해석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패널자료 성격을 고려하여 임의효과모형(REM)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지급정지자 중 상대빈곤선 미만자에게 적용 제외시 소득대체율 변화

(단위 : %, %p, 명)

연도	정지수급자 ¹⁾ (단, 저소득층 대상)		가정된 완전수급자 ²⁾ (단, 저소득층 대상)		소득대체율 개선(B-A, %P)
	소득대체율(A)	빈도	소득대체율(B)	빈도	
2012	20.4	71	38.8	71	18.4
2013	23.1	86	41.0	86	17.9
2014	23.5	96	41.0	96	17.4
2015	21.7	83	40.2	83	18.4
2016	23.2	172	36.5	172	13.3
전체	22.6	508	39.0	508	16.4

주 : 1) 상대빈곤선 미만자(저소득층)의 중에서 지급정지(감액포함)된 수급자

2) 상대빈곤선 미만자(저소득층)이면서 지급정지 된 수급자를 지급정지 되지 않은 경우로 가정

3)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함

여기서 FEM과 REM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Hausman Test를 실시하여 판단할 수도 있으나 FEM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종속변수와 주요 설명변수가 시기별로 변동성이 높아야 한다(Cameron and Trivedi, 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더미변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정효과모형(FEM)보다 임의효과모형(REM)의 결과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월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기준소득월액은 증가할수록, 교원인 경우, 연령은 많을수록, 가구원수는 많을수록(OLS는 다른 결과), 재직기간은 길수록, 퇴직연금수급자인 경우로 나타난 반면 월연금 수령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남성인 경우와 재취업을 할 경우로 추정되었다. 모든 분석모형에서 재취업을 할 경우 월연금 수령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회귀 계수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재취업이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 계수 값은 매우 낮아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27〉 재취업이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변수	Pooled OLS	REM	FEM
종속변수	ln(월연금 수령액)		
ln(평균기준소득월액)	0.687***	0.698***	(omitted)
조기퇴직연금더미 (조기퇴직연금수급=1)	0.292***	0.171***	(omitted)

변수	Pooled OLS	REM	FEM
교원더미 (교원=1)	0.076***	0.067***	(omitted)
성더미 (남성=1)	-0.020***	-0.039***	(omitted)
연령	0.005***	0.008***	0.012***
가구원수	-0.002***	0.004***	0
재직기간	0.002***	0.002***	(omitted)
퇴직연금더미 (퇴직연금수급=1)	0.514***	0.348***	-0.027 **
재취업 여부(재취업=1)	-0.011***	-0.006***	-0.007***
상수항	2,417***	2,146***	14,021***
빈도		204,355	
조정 결정계수(R2)	0.756	-	

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본 분석에서는 지급정지가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취업과 지급정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분석대상자 중에서 5년 평균으로 23.7%가 재취업하고 있었으며, 이들 재취업자 중 지급정지 혹은 감액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은 10.7%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수급자이면서 재취업 한 경우 동 비율만큼 지급정지 사유가 되는 기준소득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28〉 재취업과 지급정지 현황

(단위 : %, 명)

연도	전체		재취업자	
	재취업률	빈도	지급정지자 비율	빈도
2012	21.7	40,872	9.0	8,854
2013	22.0	40,876	9.1	9,000
2014	23.1	40,881	8.7	9,448
2015	22.1	40,884	9.2	9,029
2016	29.4	40,884	16.0	12,035
전체	23.7	204,397	10.7	48,366

여기서는 (패널)로짓분석 통해 지급정지 제도로 인해 노동시장에 재진입(재취업) 하지 못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표 29〉는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유의성이 낮은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로짓분석 및 패널로짓분석 모두 모형 3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모형3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금수령액이 많을수록,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이면 재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교원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재취업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급정지여부 더미 변수가 모형에서 삭제된 이유는 전산 자료상 재취업으로 분류될 경우 모두 지급정지되기 때문이다.

〈표 29〉 노동공급 결정요인 (로짓/패널로짓)

변수	로짓모형			패널로짓모형(랜덤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종속변수	재취업 여부(재취업=1)					
ln(월연금수령액)	0.382***	0.376***	0.365***	0.730***	0.743***	0.697***
조기퇴직연금더미 (조기퇴직연금수급=1)	-0.072					
교원더미 (교원=1)	-0.560***	-0.560***	-0.559***	-1.582***	-1.582***	-1.578***
성더미 (남성=1)	0.337***	0.337***	0.338***	0.594***	0.592***	0.597***
연령	-0.036***	-0.036***	-0.036***	-0.049***	-0.050***	-0.050***
ln(평균기준소득월액)	1.033***	1.037***	1.047***	3.559***	3.545***	3.586***
가구원수	0.113***	0.113***	0.113***	0.323***	0.324***	0.322***
재직기간	-0.008***	-0.008***	-0.008***	-0.022***	-0.022***	-0.022***
퇴직연금더미 (퇴직연금수급=1)	-0.087	-0.043		-0.105	-0.259	
지급정지여부더미 (정지 혹은 감액=1)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상수항	-17.881***	-17.922***	-17.929***	-58.608***	-58.424***	-58.558***
빈도	199,170					

로짓분석과 같이 종속변수가 이산형인 경우 해당변수의 회귀계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회귀계수의 부호를 기준으로 볼 때 로짓/패널로짓 분석에서의 결과와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월연금 수령액의 경우 ln(월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1단위 증가할 때 재취업확률이 0.70 ~ 0.74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0〉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한계 효과

구분	패널로짓모형(랜덤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ln(월연금 수령액)	0.7297***	0.7431***	0.6968***
조기퇴직연금더미(조기퇴직연금수급=1)	0.2938		
교원더미(교원=1)	-1.5821***	-1.5817***	-1.5775***
성더미(남성=1)	0.5941***	0.5922***	0.5974***
연령	-0.0492***	-0.0496***	-0.0499***
ln(평균기준소득월액)	3.5595***	3.5454***	3.5861***
가구원수	0.3232***	0.3235***	0.3223***
재직기간	-0.0215***	-0.0215***	-0.0217***
퇴직연금더미(퇴직연금수급=1)	-0.1049	-0.2586	

2.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제도 간 차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비교

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지급정지연수 제한에 따른 영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지급정지 연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사학연금은 소득이 있는 한 연금지급정지연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최대 5년 동안만 연금지급정지를 제한한다. 두 제도의 지급정지연수 제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제도의 연금수령 급여액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연차별로 전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학연금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최대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와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할 경우 연금액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와 다르게 유족연금에 대하여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일부분 소득기준에 의해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단, 이 정지규정은 유족연금을 최초 수급한 3년 이후부터 해제기간 까지만 적용된다.

본 분석에 활용한 가정은 ① 노령(퇴직)연금 월수령액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모두 200만 원으로 하였다. ② 유족연금 월수령액도 두 제도 모두 100만 원으로 가정하였다. ③ 노령(퇴직)연금 지급정지 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제도상 최대 5년이므로 5년을 적용하고, 사학연금은 소득이

있는 한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④ 유족연금 지급정지 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최초 수급한 3년 이후부터 해제기간 까지 적용되는데, 이중 3년 동안 지급정지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학연금은 지급정지 규정이 없으므로 유족연금이 지급정지 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⑤ 추가적인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총급여액은 두 제도 모두 본인인 경우 월 500만 원, 유족인 경우 월 400만 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의해 유족의 총급여 월 400만 원은 연간 4,800만 원이 되고, 근로소득공제 후 연간 근로소득금액은 3,585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31〉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지급정지연수 제한 가정

구분	국민연금	사학연금
노령(퇴직)연금 수령액	월 200만 원	
유족연금 수령액	월 100만 원	
노령(퇴직)연금 지급정지 기간	5년간	소득이 있는 한 계속
유족연금 지급정지 기간	3년간	정지 하지 않음
본인 총급여액	월 500만 원	
유족 총급여액	월 400만 원	

결과적으로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학연금수급자는 유족연금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수급자에 비하여 퇴직연금에 대하여 연간 6,573,720원 만큼 지급정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족연금은 3년간만 적용하는 것으로 할 때 연간 430,080원만큼 덜 지급정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연금의 수령기간 5년과 유족연금의 수령기간의 3년 동안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31,578,360원의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비하여 국민연금의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2〉 연도별 지급정지 연수 제한에 따른 지급정지액 차이 분석

(단위: 원)

구분	사학연금	국민연금	차이분석
노령(퇴직)연금 1차~5차연도	매년 7,974,000	매년 1,400,280	매년 6,573,720
유족연금 1차~3차연도	0	매년 430,080	매년 -430,080
합계	39,870,000	8,291,640	31,578,360

나. 연기연금 도입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수익비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사학연금제도에는 없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최대 5년 동안 급여의 정지 혹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연기연금 제도로 인해 연금액이 증액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에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기연금이 도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사학연금에도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연기연금제도를 적용할 경우 연금수급자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개선효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소득대체율 및 수익비의 변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표 33>과 같이 가정을 설정하였다. ① 가입시점 및 가입연령은 1998년에 30세인 대학교원으로 하였다. 신규가입연령은 신규가입 연도별 남녀 신규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상향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30세로 하였다. ② 가입기간은 30세부터 49세까지 20년 동안 가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③ 노령(퇴직)연금 수령액 예상액은 월 300만 원으로 하였다. ④ 퇴직 후 추가소득은 5년~15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⑤ 연금액 감액은 연기연금 적용시 없는 것으로 하되 연기연금 미적용 시 연금액의 1/2로 하였다. ⑥ 연금수급 연기 및 정지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였다. 연기연금 적용 시 가산율은 연간 7.2%, 5년간 36%로 하였다. 연금수급기간은 연기 및 정지기간 각각 5년을 고려하여 15년으로 하였다. 수급개시연령은 60세로 하였으며, 연금 수급기간은 국민생명표상의 연금지급개시연령별 평균여명을 참고하였다.

<표 33>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기연금 가정

구분	연기연금 적용	연기연금 미적용
가입시점 및 가입연령	1998년에 30세인 대학교원	
가입기간	2017년 49세에 퇴직하여 가입기간 20년 (2018년 현재 50세 가정)	
노령(퇴직)연금 수령액	월 300만 원	
추가소득 발생기간	5년~15년	
연금감액 수준	없음	1/2
연금수급 연기 및 정지기간	연기기간 5년	정지기간 5년
연기에 따른 가산율	연간 7.2%(5년간 36%)	없음
연금수급기간	15년	
수급개시 연령 및 수급기간	60세	
거시경제변수 등	할인율,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은 <표 34> 참고	

연기연금 가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2장 국민연금제도를 참고하였으며, 거시경제변수 등은 <표 34>에서 정리하고 있다.

<표 34> 할인율 · 보수인상률 ·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

(단위 : %)

연도	보수인상률	승급지수	물가상승률	연금상승률	할인율	지급율
2018	2,60	1,70	2,50	-	2,76	1,83
2019	3,10	1,70	2,54	-	3,20	1,81
2020	3,10	1,70	2,58	-	3,07	1,79
2021	3,10	1,70	2,62	2,62	3,29	1,78
2022	3,10	1,70	2,67	2,67	3,31	1,77
2023	3,10	1,70	2,71	2,71	3,29	1,76
2024	3,20	2,40	2,70	2,70	3,31	1,75
2025	3,20	2,40	2,66	2,66	3,33	1,74
2030	3,30	2,40	2,37	2,37	3,37	1,73
2035	3,40	2,40	2,12	2,12	3,49	1,73
2040	3,50	2,40	2,00	2,00	3,48	1,70
2045	3,45	2,40	2,00	2,00	3,42	1,70
2050~	3,27	2,40	2,00	2,00	3,42	1,70

구체적인 수익비 분석 결과는 <표 35>에서 보는 바와 5년간 연기연금제도를 적용할 경우 퇴직연금의 수익비는 2.19배가 되지만, 연기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액의 최대 50%가 감액되므로 수익비는 1.94배로 낮아진다. 반면, 연금을 수령하면서 10년 동안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기연금제도는 1회에 한하여 5년간만 적용되므로 5년 후의 연금액에 대하여는 최대 50%가 감액 정지된다. 10년간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연기연금을 적용 시에는 퇴직연금의 수익비는 1.79배가 되지만, 연기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액의 최대 50%가 감액되므로 수익비는 1.65배로 낮아진다. 또한 반면, 연금을 수령하면서 15년 동안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수익비는 1.42배가 되지만, 연기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액의 최대 50%가 감액되므로 수익비는 1.38배로 낮아진다.

〈표 35〉 연기연금 적용과 미적용시 수익비 차이 분석 결과

(단위 : 천 원, 배)

지급정지 연한	5년		10년		15년	
	미적용	적용 ²⁹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연기연금 적용 여부	미적용	적용 ²⁹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부담금수입 현가(A)	202,452	202,452	202,452	202,452	202,452	202,452
퇴직연금 현가(B)	394,619	443,604	335,432	363,110	280,243	288,053
유족연금 현가(C)	161,850	220,117	161,850	220,117	161,850	220,117
퇴직연금 수익비(F=B/A)	1.94	2.19	1.65	1.79	1.38	1.42
유족연금 수익비(G=C/A)	0.79	1.08	0.79	1.08	0.79	1.08

3. 기타 경제적 효과 비교

가. 지급정지가 연금수급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현행 연금법에 의하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금소득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으로 보아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동일한 연금제도내에서 동일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중 수급자 B는 추가적인 소득 발생으로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세부담을 더 떠안은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6〉을 통해 볼 때 추가적인 소득을 감안할 경우 A와 B의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을 비교해 볼 경우 B의 세율이 높다. 즉, A는 연금소득과세만 적용되나 B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어 연금급여가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해당 감액분을 추가적 조세부담으로 볼 경우 동일 연금소득에 대해 세 부담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³⁰

29. 수익비 분석을 위하여 사학연금의 기초율이 필요함. 기초율에는 크게 보수인상률과 승급지수, 연금상승률 및 할인율 가정이 필요하고,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의 자료가 필요함. 연기연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급개시연령에 도래하여도 5년 동안 퇴직연금액을 수령하지 않지만 5년 후에는 당초 예상되는 연금예상액에 매년 7.2%가 가산되며, 5년 연기 시에는 36%가 가산되므로 연금예상액의 1.36배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비를 산출함. 반면, 연기연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연금액의 50%가 감액되는 것을 가정하여 수익비를 산출한 것임.

30.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감안한 종합소득금액에 감액된 급여의 추가 세부담까지 감안할 경우 추가근로소득이 발생 시에 고액소득자가 불리하다.

과거에는 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출시 과세·급여시 비과세’가 되었던 과세형태가 2002년부터는 ‘각출시 비과세(소득공제)·급여시 과세’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연금수급 시 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학연금에서 추가 근로소득발생에 의한 연금지급 정지 혹은 감액제도는 연금소득 발생에 따른 연금과세 원칙과 별개로 다른 소득 발생 시 연금소득에 감액이 되는 형태여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여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인 산출을 위해 <표 36>에서와 같이 가정을 설정하였다. ① 퇴직연금 급여액은 월 300만 원으로 하였다. ② 근로활동으로 추가적 소득 즉 월총급여가 500만 원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③ 연금 지급정지액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생기는데, 감액 금액을 추가적 조세로 가정한다. ④ 추가소득 발생 시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표 36> 연금의 추가적 세부담 분석을 위한 가정

구분	연금만 받는 경우 (A)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B)
노령(퇴직)연금 급여액	월 300만 원	
추가 총급여액(근로소득)	0원	월 500만 원
연금 지급정지액	없음	감액금액을 추가적 조세로 간주
종합과세	없음	종합소득 신고

위 가정을 고려할 때 A와 B는 월 3백만 원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인데, A는 연금소득만으로 노후생활을 하는 반면, B는 근로소득 월 500만 원을 추가로 획득하여 월 800만 원으로 노후생활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두 연금수급자의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변화는 <표 37>과 같으며, 이에 의하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B수급자가 연금급여만 발생하는 A수급자보다 세부담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금소득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 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적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공적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있으면 종합소득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한 세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며, 게다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연금액 또한 추가적 조세로 본다면 더욱 세부담은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37〉 연금소득과세와 근로소득세의 추가적 조세 부담 감안 시 세율의 변화

구분	A(연금만 받음)	B(추가소득 발생)
연금급여액	월 3백만 원	월 3백만 원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0원	월 5백만 원(47,250,000원) (60,000,000원-12,750,000) ³¹
연금 정지금액	0원	월 137,750원
연금소득금액	27,500,000원 (36,000,000-8,500,000)	26,012,300원 ³² (34,347,000-8,334,700)
연금소득세	3,045,000원 (720,000+15,500,000×15%)	2,821,845원 ³³ (72만 원+14,012,300×15%)
근로소득세	0원	6,120,000원 (582만 원+1,250,000×24%)
종합소득 산출세액(A)	3,045,000원	12,362,952원 ³⁴ 582만 원+(73,262,300-46,000,000)×24%
추가적 조세(B)	0원	1,653,000원 (137,750×12개월)
납부금액(C=A+B)	3,045,000원	14,015,952원
한계세율(근로소득)	0%	12.95% ³⁵ (6,120,000/47,250,000)
평균세율(종합소득)	11.07%	16.87% (12,362,952/73,262,300)
한계세율 (추가적조세 부담 감안)	0%	16.45% [(1,653,000+6,120,000)/47,250,000]
평균세율 (추가적 조세부담 감안)	11.07%	19.13% (14,015,952/73,262,300)

나. 지급정지가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퇴직소득심사제의 실시로 인하여 2005년부터 2016년 말까지 감액된 사학연금 급여액은 〈표 38〉과 같이 총 1,047억 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말 현재 사학연금제도 가입자는 31만 7,602명이며, 전체 연금수급자는 6만 9,218명으로 제도 부양률은 21.7%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31.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 × 5%로 공제함.

32. 총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8,334,700원(630만 원+1,400만 원 초과액의 10%로 공제)이 공제됨.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33.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 원초과 4,600만 원 이하는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 × 15%로 산출함.

34.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 원초과 8,800만 원 이하는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 × 24%로 산출함.

35. 한계세율은 추가소득에 따른 세율을 의미하며, 평균세율은 기존 연금급여와 추가소득을 합한 소득에 따른 세율을 의미한다.

퇴직소득심사로 인한 감액대상자는 2,972명으로 모두 퇴직연금 수급자이다. 전체 사학연금 수급자 중에서 감액대상자의 비율은 4.29%이며, 총 감액금액은 276억 원이다. 참고로, 퇴직소득 심사대상 기준금액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325만 6천 원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2,796만 원이다.

사학연금제도는 최근 일시금 선택비율이 대폭 감소하여 12%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 진행에 따라 연금선택비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38〉 사학연금제도의 퇴직소득심사제도 총괄 현황

(2017년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해당 내용	구분	해당 내용	
퇴직소득명칭	퇴직소득심사제	감액정지액 (백만원)	2005년	728
전체제도가입자수	317,602명		2006년	3,234
전체연금수급자 (2017년말)	69,218명		2007년	3,906
부양률	21.7%		2008년	4,139
감액자/전체연금수급자	4.8%		2009년	4,851
퇴직연금수급자 (2017년말)	61,692명		2010년	6,772
유족연금수급자 (2017년말)	6,714명		2011년	7,992
장해연금수급자 (2017년말)	128명		2012년	9,291
연계연금수급자 (2017년말)	684명		2013년	10,256
연금선택률	88.0%		2014년	12,006
근로소득 심사기준금액 (월급여, 백만원)	3.256		2015년	13,934
사업소득 심사기준금액 (연간 소득금액, 백만원)	27.96		2016년	27,600
			전체	104,708
1인당 평균 연금월액	약 271만원		2016년 12월말 감액자 수 (정산차액 환급자수 포함)	2,972명 (1,498명)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내부자료(2017)를 활용하여 분석

제5장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

1. 사학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 적용 완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정지제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적용함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감소시켜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후소득 변화와 근로의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지급정지는 대상자의 노후소득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³⁶ 대상자 규모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의 존재여부를 현 상황에서 검토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근로의욕 변화는 지급정지 되고 있는 수급자의 재취업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는데, 재취업을 한 경우는 지급정지 되기 때문에 지급정지는 재취업을 억제하는 유인이 있다. 다만, 전체 수급대상자 중 재취업자 비중이 23.7%이고, 이중 지급정지자 비중이 10.7%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체 수급자 중 재취업으로 지급정지되고 있는 비중은 2~3%로 낮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령화속도와 장수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소득을 현재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는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소득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집단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제도를 완화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하겠다.

36. 실증분석에서는 지급정지를 적용하지 않을 때 노후소득이 제고되는 수준을 추정하였음. 따라서 지급정지가 적용되는 현 제도 하에서는 그만큼 노후소득이 감소되고 있음을 방증함.

나. 연기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

이미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사학연금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급여의 정지 혹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특수직역연금도 국민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심사에 따른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은 퇴직 후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일정기간 늦추어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사학연금에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연금수급자 측면에서 지급정지 되는 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초고령기에 노후소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지급정지 연수와 지급정지 금액 동일 적용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지급정지 연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이미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있는 한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정지하나, 국민연금은 최초 연금을 수령하는 5년 동안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정지 적용에 차이가 있어 제도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물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가 갖는 특수성³⁷으로 인해 제도 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수성이 아닌 제도 내용(예, 지급정지 연수 등)은 차별을 없애 형평성 논란을 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정지연수와 지급정지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사학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행정적 개선방안

가.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심사대상 소득의 확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특수직역연금의 퇴직소득심사의 대상소득은 국민연금의 소득활동노령연금의 대상소득과 차이가 있었으나, 2016년 이후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함에 따라 실제적으로 두 제도 간 대상소득 차이는 없어졌다. 다만,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37. 여기서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공무원인 경우 공무수행상 비밀에 관련되거나, 사학의 경우 교육자로서 자질 등이 해당됨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금융소득도 대상소득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신고서에 기재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 심사제를 적용하여 추가적인 소득에 따른 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실질적으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간의 관계에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즉, 동일한 재원을 근거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 되나, 이를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 되고 있지 않아 소득 간 형평성이 발생하게 된다. 전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이고 후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간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명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분명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나. 퇴직소득심사제도 적용상의 개선방안 모색

(1) 계절성 소득에 따른 근무월수 현실적인 적용

현행 지급정지제도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종사월수(근무월수나 사업월수)로 안분하여 종사월수의 소득금액이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소득월액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한다. 이에 따라 계절성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금수급자가 불리 혹은 유리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소득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사업소득자 중에서는 1년 내내 사업을 하기 보다는 실제로 4계절 중에서 어느 한 계절에만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농업, 휴양시설의 운용 등에 따른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계절성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업한 종사월수의 산출이 어려운 편이다. 실제로 사업소득은 1년 내내 사업을 수행하지만, 사업을 자주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악용의 소지가 있다. 꾸준히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어느 한 계절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이 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1년 내내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소득 금액이 기준금액을 월등히 큰 금액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에 대하여 매월 감액을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제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에 대하여 감액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³⁸

향후 계절성 소득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계절성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1년 동안 근무를 하여 소득을 평균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가령 3천만 원을 평균적으로 받으면 감액되는 금액은 없지만, 계절성 사업을 할 경우 여름 한철에만 3천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3달 동안 감액되는 금액이 연금액의 1/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근무한 기간만큼만 종사월수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로 부동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43만 원이 발생하고 3개월 동안의 급여는 9천만 원인 경우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신고로 인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정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면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에 따라 적용되므로 3개월의 소득에 대하여만 연금액의 1/2만 감액하고 종결될 수 있다. 사업소득의 결손 시 실제소득금액이 음수인데도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자 간의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급정지액을 구하게 되므로 위의 사례는 다소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감액되는 연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하지 않도록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어느 한 계절에만 근무하는 경우의 문제점이 있어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 시간강사 연금지급 정지제도 적용시 실제 강의한 월수 적용

시간강사 연중계약으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불리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의 시간강사를 할 경우 추가 근로계약으로 인한 지급정지가 발생할 문제가 있다. 연금지급 정지시 실제

38. 예를 들어 여름 한철에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이 2,796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지급정지액이 발생되지 않으나 사업소득금액이 큰 금액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정지하게 됨. 예를 들어 추가적인 소득금액이 6,0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 중에서 138만 원이 감액됨.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이 3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였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3개월 동안의 계절성 소득에 대하여 최대 감액되는 연금액의 최대 연금액의 1/2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150만 원에 대하여 최대 3개월 동안 감액되어 450만 원이 최대로 감액될 수 있는 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38만 원이 매월 감액되어 1,660만 원이 감액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그렇지만 상황을 바꾸어 보면, 위의 계절성 소득에 대하여 3개월 동안의 사업소득금액이 2,796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게 되면 3개월 연금지급액의 반액이 감액되어 최대 450만 원의 연금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계절성 소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근무월수를 산출할 경우 학교기관 등에 강의를 할 경우 통상 강의월수는 3월부터 6월까지 강의를 하고 여름방학에는 중단하였다가 9월부터 12월에 다시 강의를 하고 있으나, 계약서 상에서는 각각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실제로 연중 강의를 한 것으로 소득이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월수가 최대 8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소득은 12개월의 평균소득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보다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강의한 월수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말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아니면 전체적인 강의 월수를 1개월의 급여로 보아서 지급정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 강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강의한 월수만을 지급정지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거나 과거 기타소득과 같이 별도의 세목으로 정하여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연금제도의 목적이 소득상실에 따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퇴직후 상당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연금소득을 감액하도록 설계된 퇴직소득심사제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다만, 최근 고령화와 장수화 등으로 노후준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사학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갖는 문제를 노동시장 측면에서 근로의욕 저하를 유인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가 노후소득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고, 노동공급 또한 줄일 수 있는 우려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소득을 감소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재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도 간 지급정지 연수 적용에 차이가 있고, 또한 연기연금 존재 여부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제도 특수성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타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문제와 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가 연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 있어 추가적 조세로 이해되어 이중과세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제도 평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 근로, 사업소득 중심이라기보다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유족연금수급자의 분석을 위하여 배우자 생존여부, 배우자의 연금수령여부, 자녀 결혼여부 및 배우자의 타 공적연금 가입여부와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하는 가운데 근로 및 사업활동 여부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확보하여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와 같은 면을 감안하지 못하였다.

또한 개인의 수입비와 급여율을 책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하는 것도 소득심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일일이 산출하여 분석을 한다는 것은 시간상의 제약과 자료 확보 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 확장된 연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성호 · 이지은 (2011),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권혁진 · 김대철 (2009), 「국민연금의 소득조사(earning test) 기준 변경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3호, pp.161~199
- 권혁창 · 정창률 · 박주완 (2014), 「특수지역연금 수급과 고령자 노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3호, pp.27~50
- 김수성 (2008), 「퇴직소득심사제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1~45.
- _____ · 윤성만 (2012), 「퇴직소득심사제가 연금수급자의 과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제34권, 한국세무회계학회, pp. 21~43.
- 김원섭 · 이정우 · 정해식 · 한정림 (2007),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2, pp.40~61
- _____ · 이정우 · 한정림 (2009), 「근로와 연금수급의 병행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의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4호, pp.187~216
- 김재호 (2011),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이 소득수준별 개인연금보험료에 미치는 효과」, 『보험금융연구』 제22권 제4호, pp. 3~31
- 이승렬 · 최강식 (2007),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 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4호 pp. 83~103
- 전승훈 (2010), 「생애 연금급여가 은퇴시기결정 및 은퇴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 논문집』 제12권 제1호, pp.3~32
- 정인영 · 유현경 (2017),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정책 보고서 2017-07
- 지은정 (2005),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가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지급정지 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7권 제2호, pp.375~403

참고문헌

- _____ · 김동배 · 노인철 · 이익섭 (2003), 「공무원연금이 가입자의 퇴직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pp.1~33
- 국민연금공단 Homepage <http://www@nps.or.kr/>
- 공무원연금공단 Homepage <http://www@geps.or.kr/>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Homepage <http://www@tp.or.kr/>
- 군인연금공단 Homepage <http://www@mps.go.kr/>